



2019 ISSUE PAPER 2

현물기부 이슈와 해결방안 모색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

2019. 10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2019년 3월 7일 한국의 현물기부를 접수 받는 공익법인과 협회가 모여 현물기부문화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환경과 윤리적 소비 등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자원순환과 나눔실천에 동참하는 시민의 현물 기부 또한 점진적으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전한 현물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한 기관

-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 밀알복지재단 굿월스토어
-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 아름다운가게
-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이 보고서는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 전문가들의 협업으로 작성되어 아름다운재단에서 발행하였습니다.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센터에서 자문을 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문의 : 아름다운재단 연구사업팀 전현경, 장윤주 research@beautifulfund.org



CONTENTS

들어가며 7

1. 국내 현물기부 현황 9

2. 현물기부 현황과 이슈 진단 13

- 1)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 전문가 의견
- 2) 현장단체 설문조사 결과

3. 현물기부 이슈와 문제 정의 33

4. 해결 방안과 개선 과제 39

- 1) 실무적 해결방안 : 현물기부 매뉴얼
- 2) 실무적 해결방안 : 거절하거나 남는 물품 활용 네트워크
- 3) 법제도 보완 방안
- 4) 인식개선 캠페인

〈별첨〉 57

별첨1. 물품수령기준 (아름다운가게, 푸드뱅크)

별첨2. 현물기부 관련 법

별첨3.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들 어 가 며

현물기부는 현금기부와 함께 일상적인 나눔의 주요한 활동이다. 나에게서는 필요 없지만 남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물품은 기부자에게는 금전보다 손쉽게 부담없이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자, 기부단체에게는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자원의 선순환으로 이어져 환경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나눔장터 등의 등장에 따라 현물기부가 대중화 되었으며, 복지관 및 복지재단, 비영리민간단체 등 다양한 민간조직의 등장과 숫자의 증가도 그 필요성을 배가시켰다. 이와 함께 기부를 받는 조직에서는 현물기부와 관련된 어려움도 포착되고 있다. 기부자가 일반 상식에 비해 너무 높은 가격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요구하는 경우, 당장 보관할 장소가 없는데 지나치게 많은 물품을 받게 되는 경우, 가격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 등 실무적인 어려움부터 자칫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경우도 있다.

마침 2019년 초에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서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해소할 방안에 대해 제안을 주었고 관련 경험이나 지식을 가진 기관들이 함께 의견을 교환하던 중 많은 비영리단체와 시설이 현물기부와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리된 기준이나 가이드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되었다. 이후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굿윌스토어,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재단, 서울푸드뱅크,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시민기금 8개 기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되었다.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는 비영리기관이 현물기부의 수령과 사용에서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기부자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고자 3월부터 6월까지 연구와 토론활동을 수행하였다.

참여기관이 제시한 고충사례를 바탕으로 아름다운재단,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설문을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문제점과 해결과제를 정리했다. 그 결과 현물기부 제도개선을 위한 해결과제는 실무적 해결 방안, 법제도 보완 방안, 그리고 사회적 인식개선과제라는 세가지 측면으로 분류되었다. 실무적 과제는 각 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매뉴얼 발간과 기준물품의 유통과 보관, 사용을 위한 기관간 업무협력강화로 보완할 예정이다. 법제도 개선과제는 현행 법에서 모호하거나 상충되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현물기부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정리하여 장기적인 제도개선활동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19년 연내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 이하 기관명은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한장협(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장복(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푸드뱅크(서울특별시푸드뱅크센터), 굿윌스토어(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1

국내현물기부 현황

1. 국내 현물기부 현황: 통계와 법률

현물기부의 종류는 생산자가 재고를 기부하는 경우, 기관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가 사용하던 중고물품을 기부하는 경우가 있다. 재고나 중고물품이 폐기되지 않고 재활용된다는 자원순환의 가치를 창출한다. 더불어 개인에게는 쉬운 기부체험의 계기가 되고, 비영리기관에게는 자원을 구매하지 않고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물품의 정확한 가치측정이 어렵고, 물품의 특성상 필요로 하는 곳에 제때 전달하는 일이 쉽지 않고, 배송과 보관에 별도 비용이 든다는 것이다.

현물기부의 전국 통계가 수집된 자료는 없으나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통계청 사회조사, 한국가이드스타의 공익법인 공시, 푸드뱅크 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이 가능하다.

- 1)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신고된 기부금은 총 13조로 기업이 4.6조, 개인이 8.3조이다. 이 중 대부분은 현금기부이나 일부 현물기부 중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 현물기부 금액만을 별도로 확인할 수는 없으며, 국세청에 기부금신고가 되지 않은 금액은 이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통계청 사회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은 26.7%, 현물기부에 참여한 개인은 6.2%로 파악되고 있다.
- 3) 가이드스타 공익법인공시에 공시된 기부물품은 2017년 기준 1,909억원 규모이다¹⁾.
- 4)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푸드뱅크를 통해 전달된 식품과 생활용품은 2015년 기준 1,583억원 규모이다

현물기부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 및 증여세법”으로 각 법률이 다루고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출처 : 한국가이드스타 홈페이지 “2019 공익법인 현황소개_재무현황(2)”
http://www.guidestar.or.kr/academy/trend_view.asp?bid=TREND&buid=10439

- 1)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을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贊助金品)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정의한다. 이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 대해 1천만원 이상의 모집행위가 있을 시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2)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식품과 생활용품²⁾은 전국푸드뱅크를 통해 별도 관리되지만, 여타 현물기부는 체계적으로 정보를 취합하기 어렵다. 또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기관의 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기부물품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소득세법(제34조 제1항, 2항, 시행령 제81조), 법인세법(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37조),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법에서(시행령 제52조)는 기부물품 가액 기준과 세제혜택을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특성으로 인해 부가가치세법(제26조)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 4) 그 외 공익법인회계기준(제26조, 33조)에서 기부금품의 수익인식과 측정,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별첨2.참고)



2

현물기부 현황과 이슈진단

2) 기본생활에 필요한 세제, 휴지, 개인 위생용품, 청소도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품군을 말한다.

2. 현물기부 현황과 이슈진단

현물기부 관련 애로사항을 정리하기 위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한장협, 한장복, 푸드뱅크 각 기관이 현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을 논의하여, 이 문제점을 중심으로 3차례 현장단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 전문가의 문제점 진단

식품기부를 제외한 현물기부는 정확한 현황파악도 되지 않고 있으며 법 준수나 회계처리를 위한 매뉴얼이 턱없이 부족하였다. 정책 측면에서 식품이나 생활용품 외의 품목은 세금관련이나 복지현장의 자원으로 큰 비중을 두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기관 측면에서 보면, 대형기관은 중고물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를 제외하고는 현물기부의 비중이 매우 적었다. 장애인시설과 복지관은 비교적 현물기부의 횟수나 규모가 큰 편인데, 기부자관리나 회계 인력 등이 부족하여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문제점은 현물기부의 가치측정의 모호함이다. 현물기부의 가치를 '장부가', 혹은 '시가'로 인정하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증빙이 어렵고 소득세법, 상속세법, 법인세법에서 각기 다른 기준을 제시하기도 한다. 기업에서 재고품을 기증할 때, '장부가'도 임의적 가격이다. 보통 제조업체에서 제품의 원가는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

현물기부의 가치증빙에는 기업이 생산품 기증 시 스스로 장부가액을 정한 '명세서'가 사용된다. 개인이 구매한 물품은 구매 영수증이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현물의 실물가치보다 지나치게 높은 가치가 주장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세금포탈의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

기부자 측에서도 현물을 어떻게 기부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현물기부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서울시 푸드뱅크를 기준으로 2017년 530억원 규모가 2018년에 560억원 이상으로 성장했다. 식품기부는 환경의 선순환에도 중요성을 갖는다. 식품기부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품기부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을 주거나 식품 폐기 수수료를 높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2) 현장단체 설문조사를 통한 현황과 문제점 진단

현물기부관련 현황과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2가지의 설문조사가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아름다운재단 나눔지식뉴스레터 수신자를 대상으로 2019년 3월 20일~23일의 4일간 진행했다. 두 번째로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회원기관을 대상으로 현물기부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81개,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76개 기관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아름다운재단 나눔지식뉴스레터 수신자 설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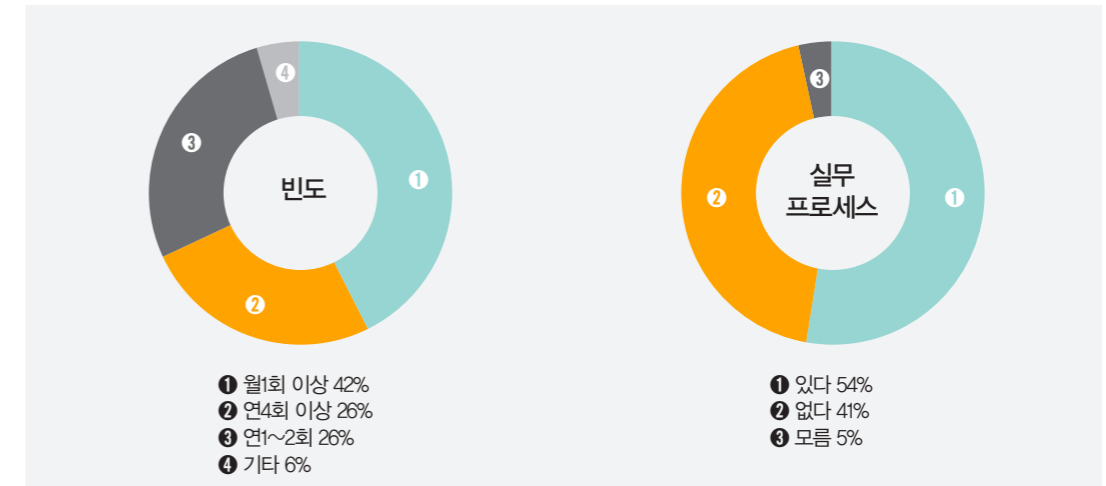
조사기간	2019년 3월 20일~23일
조사대상	구독자 중 173명 응답 수신자는 비영리,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기업 CSR담당자, 학생, 일반인 등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① 현물기부 수령 빈도

응답자 중 70% 이상이 최소 분기별로 수령하고 있다.

② 실무 프로세스 존재여부

응답자의 94%가 연1회 이상 수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 프로세스가 구비되지 못한 곳이 41%로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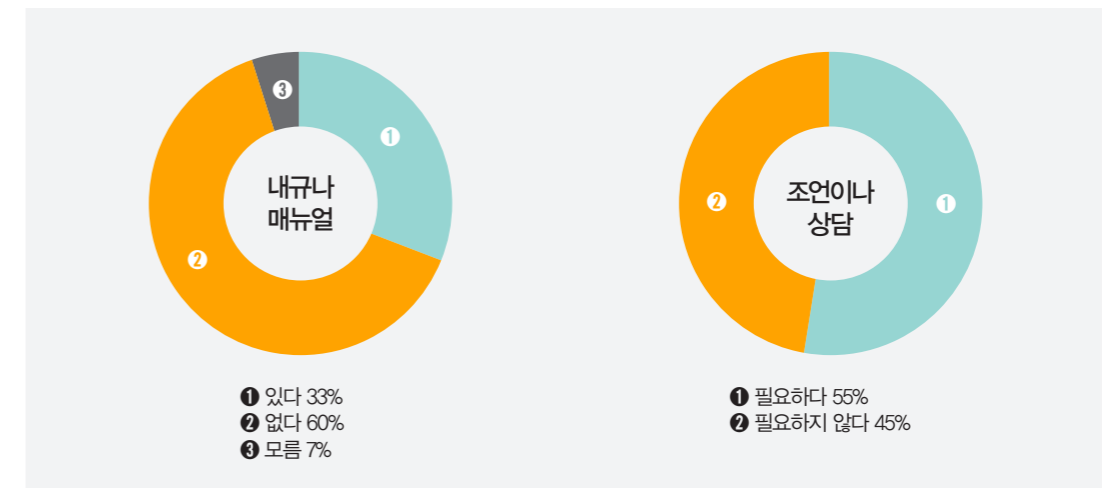


③ 현물기부 관련 매뉴얼이나 내규 존재여부

33%만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었다. 현물기부를 월별/분기별 이상으로 받는 기관에서도 절반가량이 내규나 매뉴얼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④ 현물기부 관련 조언이나 상담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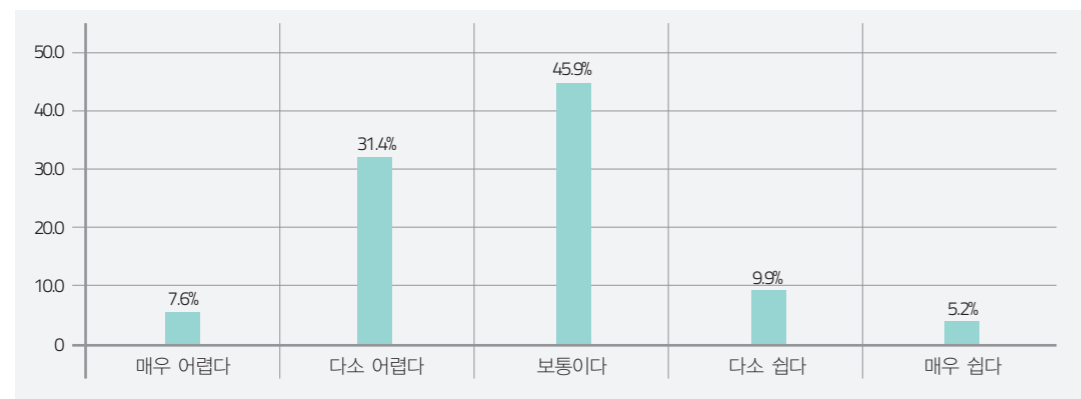
55%의 응답자가 현물기부와 관련된 조언이나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⑤ 현물기부를 받는 절차나 제도의 어려움 인식

매우 어렵다를 1점, 매우 쉽다를 5점 척도로 응답했을 때, 평균 2.7점으로 보통 이하로 응답했다. 응답자 중 어렵다고 느끼는 비율이 38.5%, 16.1%가 쉽다고 응답해 어렵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어렵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70%가 분기별 이상으로 현물기부 수령기관인 것으로 나타나, 현물기부 수령경험이 많다고 하여 더 쉽게 느끼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차나 제도의 어려움 인식



⑥ 현물기부 수령시 어려운 사항(주관식)

• 가치평가의 어려움에 대한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음

• 부적절한 물품

기관 이용자에게 필요 없는 물품

하자 있는 물품, 너무 낡은 중고품

유통기간이 너무 짧게 남은 식품

물품확인 못하고 기부를 받아야 할 때

바자회에 판매행사 후 남은 경우, 기관에서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처리 문제

• 장부처리

기관 예산에 반영되어 사용 결산을 해야 할 경우

기관 기본자산으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

재무재표 기록방법 모름

• 기부자소통

단가책정 무리하게 높게

받기 어려운 물품 거절 어려움 : 수요없는 물품, 유통기한 문제, 품질문제

수혜자가 노출된 상태의 홍보사진

기부자나 기부업체가 노출되도록 홍보 요구

• 기타

국세청이 현물에 대한 기부금품 영수증에 대한 인정을 매우 까다롭게 함

한정협, 한정복 회원기관 설문 분석 결과

조사기간	2019년 3월 26일~4월 2일
조사대상	한정협 회원기관 자원개발 담당자 대상 728개 기관 중 81개, 한정복 회원기관 235개 중 76개 응답
조사방법	온라인 설문
허용오차	95%신뢰수준에 ±3.7% 포인트 (SPSS 17.0 빈도분석, 다중응답 교차분석)

조사대상 현황

구분	한정협	한정복
강원	3	0
경기	13	8
경남	11	6
경북	6	3
광주	4	0
대전, 세종	4	3
대구	0	3
부산	4	5
서울	5	13
울산	2	3
인천	5	4
전남	6	9
전북	6	5
제주	2	4
충남	7	6
충북	3	4
소계	81	76

① 현물기부물품 개발 경로 : 현물기부물품의 91%는 특별한 노력 없이 개발되었다. 신규개발에 상당히 소극적이며, 외부 유입(기부자 직접 전달, 타기관 전달)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

기부물품 개발 경로 중 1순위에서는 기부처에서 현물기부접수처(복지시설)로 직접 연락이 49%로 가장 높았고, 민간모금기관(사회복지공동모금회, 푸드뱅크 등)을 통한 지원이 42%로 두번째로 높았다. 반면, 자원개발 담당자의 신규개발은 9%로 나타나 타 개발 경로보다 약 5배 작은 수치이다. 2순위에서는 민간모금기관을 통한 지원이 43%, 기부처에서 현물기부접수처로 연락은 경우가 39%, 자원개발 담당자의 신규개발이 19%이다. 3순위에서는 자원개발 담당자의 신규개발이 73%를 차지하여 타 개발경로에 비해 가장 비활성화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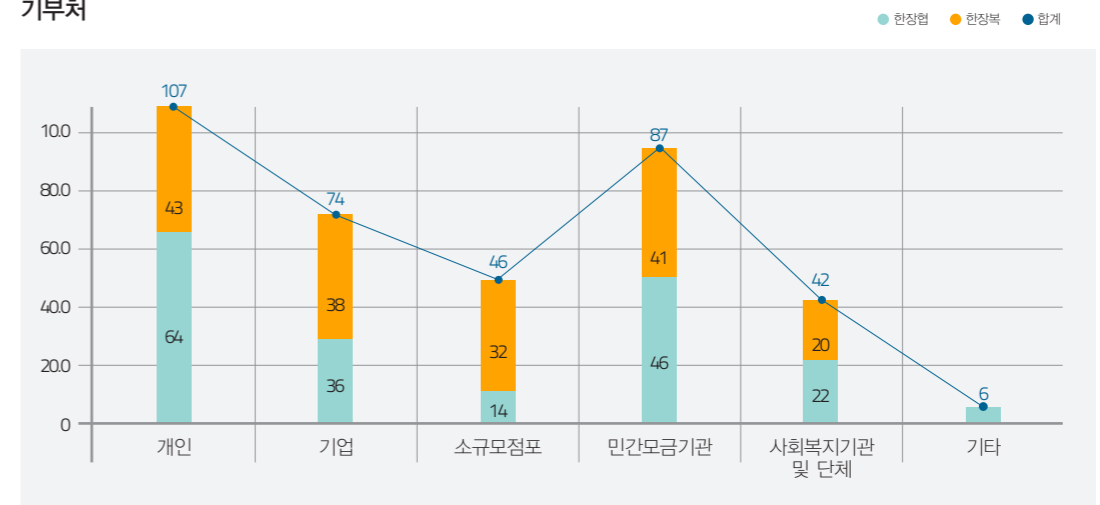
구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1순위		2순위		3순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부처에서 접수처로 연락음	39	49%	31	39%	10	13%
민간모금기관을 통한 지원	34	43%	34	43%	12	15%
자원개발 담당자의 신규개발	7	9%	15	19%	58	73%
소계	80		80		80	

※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는 해당항목 결측값으로 제외

② 기부물품 기부처 : 가장 많이 현물기부하는 대상은 개인

물품을 기부하는 기부처는 개인과 민간모금기관이라는 응답이 제일 높았다. 민간모금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푸드뱅크 등 대형 모금기관에서 접수한 물품이 시설로 전달되는 경우이다.

기부처



구분	한정협		한정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개인	64	34%	43	25%
기업	36	19%	38	22%
소규모점포	14	7%	32	18%
민간모금기관	46	24%	41	24%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22	12%	20	11%
기타	6	3%	0	0%
소계	188	100%	17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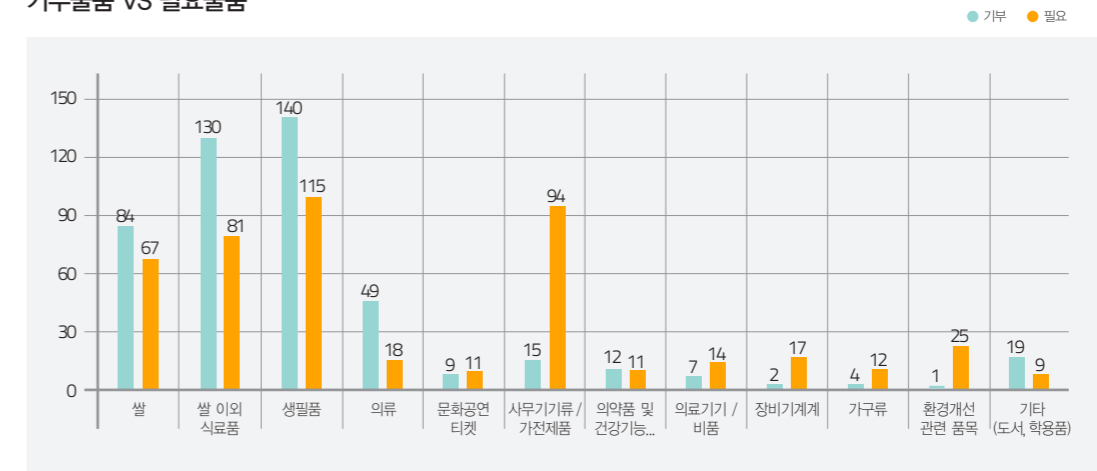
※ 기타 내용(추가로 기부처 입력한 사항)

- 민간단체, 자원봉사단체, 지역종교시설, 주변단체, 모임단체, 개인병원
- 개인에 포함되는 기부처로 거주인 가족, 봉사자, 직원으로 80%를 차지하고, 기업은 매우 부족하며, 소규모 점포에 해당되는 상점은 예를 들어 동네 제과점, 수산, 건강식품, 약국 등이고, 민간모금기관은 연 1회 수령하고 있으며, 푸드뱅크사업단에서 수령하고 있는 물품은 50% 정도 유용하게 사용하나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동일 품목이 대량이어서 활용성이 떨어진다. 사회복지관련 기관으로부터 외부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되어 수령하고 있으며, 기타로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명절위문품 등이 있다. 상품권의 경우 물품으로 수입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투명하게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다.

③ 기부 받는 물품 및 시설 내 필요물품(다중응답) : 기부가 들어오는 물품은 생필품, 식료품, 쌀, 의류 순.

기부처로부터 접수되는 물품의 현황에선 식품류가 42%, 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가전제품 응답이 높았는데, 장애인 시설 법령 변화로 인해 한 방에 여러명이 거주할 수 없게 되면서 새로 방을 만들게 되었고, 각 방마다 가전제품을 갖출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필요보다 기부가 많은 품목은 의류, 쌀 이외 식료품 등으로 기부가 많은 품목과 기타물품들로 확인되었다. 차후 현물기부접수처에 필요한 현물정보를 공개하여 현물기부 적합성을 높일 수 있을지 고려할 수 있다.

기부물품 VS 필요물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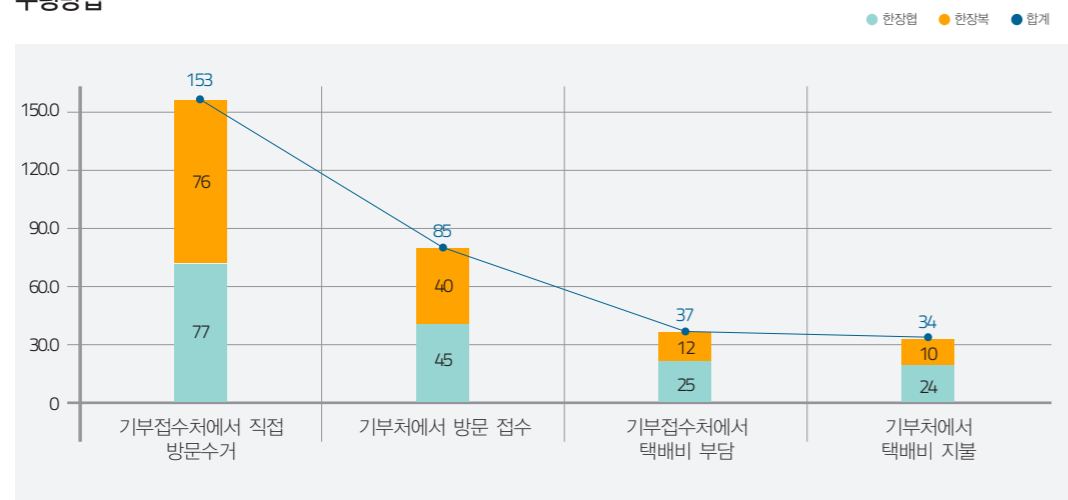


구분	한정협				한정복			
	현재 현물기부물품		현물 필요물품(자원개발)		현재 현물기부물품		현물 필요물품(자원개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쌀	40	16%	25	10%	44	19%	42	18%
쌀 이외 식료품	64	26%	30	12%	66	29%	51	22%
생활용품	76	31%	57	23%	64	28%	58	25%
의류	24	10%	5	2%	25	11%	13	6%
문화공연 티켓	5	2%	6	2%	4	2%	5	2%
사무기기류	0	0%	13	5%	1	0%	9	4%
가전제품	13	5%	53	22%	1	0%	19	8%
도서류	2	1%	1	0%	5	2%	1	0%
학용품	1	0%	1	0%	1	0%	1	0%
장비기계	2	1%	11	4%	0	0%	6	3%
가구류	3	1%	11	4%	1	0%	1	0%
환경개선 품목(벽지, 장판 등)	1	0%	20	8%	0	0%	5	2%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9	4%	2	1%	3	1%	9	4%
의료기기	2	1%	5	2%	1	0%	2	1%
의료비품	2	1%	3	1%	2	1%	4	2%
기타	2	1%	3	1%	8	4%	2	1%
소계	246	100%	246	100%	226	100%	228	100%

④ 기부물품 수령방식(다중응답) : 직접방문 기부가 가장 많고, 현물기부 증가로 접수처의 부담이 되고 있음

기부물품의 수령은 현물기부접수처에서 기부처로 직접 가지러 가는 경우가 45%, 55%로 가장 많았으며, 택배비는 접수처에서 지출하는 빈도가 14%, 9%, 기부처가 지불하는 경우는 14%, 7%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전문가 회의에 따르면 기업에서 재고를 기부하면서 창고로 직접 가지러 오라고 연락하는 경우가 많다.

수령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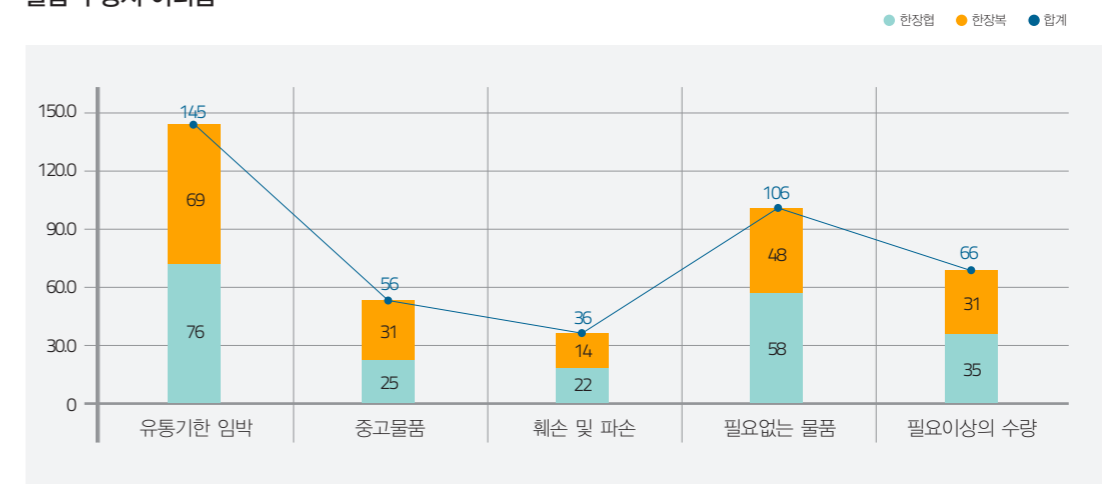
구분	한정협		한정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물기부접수처(복지시설 등)에서 직접 방문 수거	77	45%	76	55%
기부처(개인, 기업 등)에서 방문 접수	45	26%	40	29%
현물기부접수처에서 택배비 부담	25	14%	12	9%
기부처(개인, 기업 등)에서 택배비 지불	24	14%	10	7%
기타	2	1%	0	0%
소계	173	100%	138	100%

⑤ 물품 수령 시 어려움(다중응답) :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 필요 없는 물품, 필요 이상의 수량, 보관장소 부족 순.

현물기부접수처별로 물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사례가 32%, 30%로 가장 많았고, 필요없는 물품을 기부 받은 사례는 25%, 21%로 나타났다. 또한 중고물품의 현물기부 사례가 11%, 13%로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보관장소 부족 사례가 6%, 16%이다.

현물기부접수처의 공간규모의 한계로 보관장소의 애로가 존재하며(6%, 16%), 유휴 현물기부물품의 경우가(불필요, 대량) 40%, 34%로 나타났다. 중고물품의 빈도는 11%, 13%로 적지 않은 현물기부물품이 접수되고 있으며, 현물기부접수처의 목적사업 특성상(기초생활수급자 지원사업) 중고물품은 대부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한다.

물품 수령시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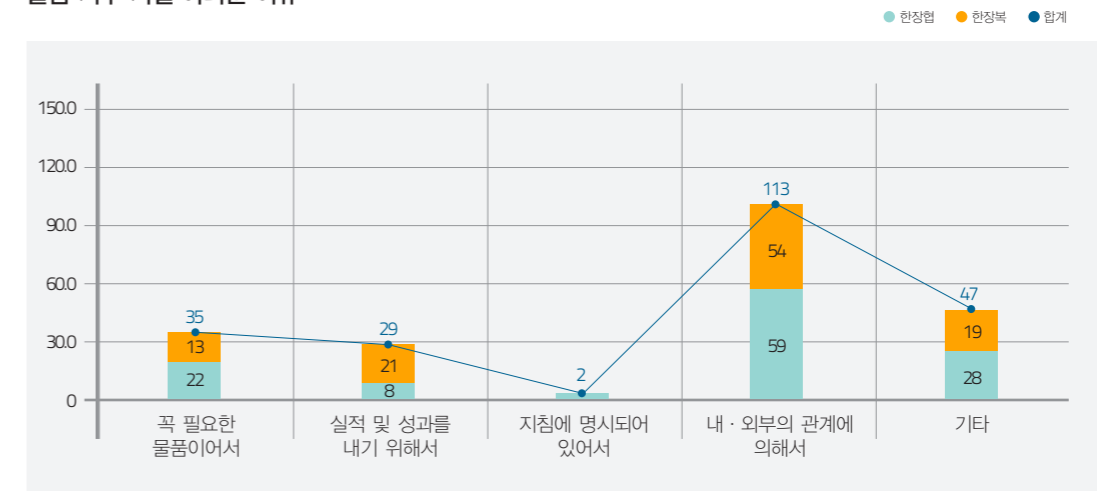
구분	한정협		한정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물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경우	76	32%	69	30%
중고물품일 경우	25	11%	31	13%
물품이 훼손 및 파손되어 온 경우	22	9%	14	6%
필요없는 물품을 기부받은 경우	58	25%	48	21%
필요 이상의 많은 수량의 물품을 기부받은 경우	35	15%	31	13%
보관장소의 부족	15	6%	36	16%
기타	3	1%	1	0%
소계	234	100%	230	100%

⑥ 기부물품 거절이 어려운 이유(다중응답) : 대내외적 관계에, 물품을 가려받는다는 부정적 인식

기부물품 거절이 어려운 이유로 '내부 혹은 외부의 관계에 의해서'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부자가 물품 뿐 아니라 현금기부도 함께 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을 때, '거절'이 기부자에게 부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부 거절이 알려져 지역사회에서 소위 '배부른 단체'로 평판이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기타가 24%, 17%이며, 현물기부접수처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어서가 19%, 12%, 접수처의 실적 및 성과를 내기 위해서가 7%, 19%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거절시 다음에는 기부를 받지 못할 것 같아서', '거절하기 어렵다', '다음 후원연계를 위한 관계형성과 지속적인 후원 유지', '기관의 이미지', '후원자의 성의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거절 한 뒤 이후 시설에 대한 평이 좋지 않거나 오해를 살 수 있기에', '기부물품을 가려 받는다는 외부의 부정적 인식, 배부른 시설, 지원이 필요없는 시설이라는 인식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물품 기부 거절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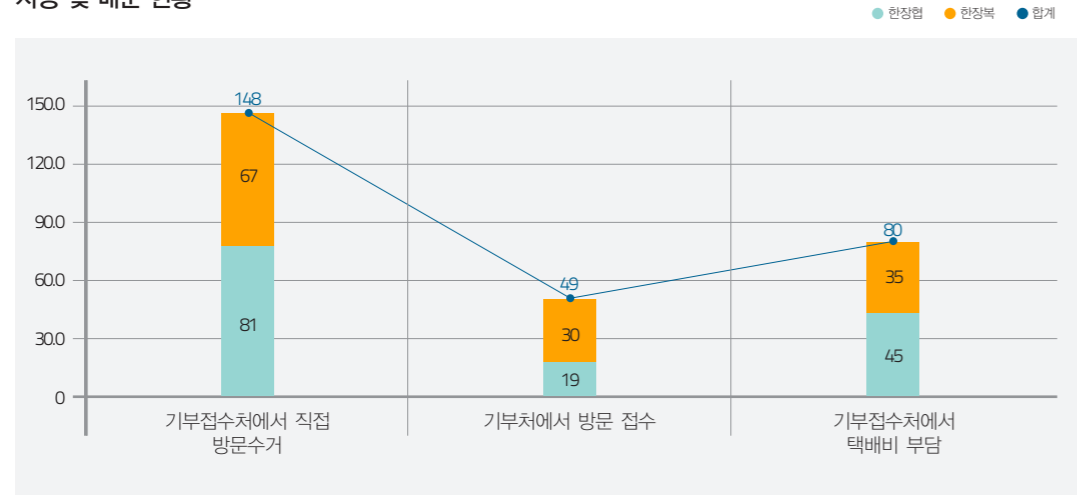


구분	한정협		한정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현물기부접수처(복지시설 등)에서 꼭 필요한 물품이어서	22	19%	13	12%
현물기부접수처 내 실적 및 성과를 내기 위해서	8	7%	21	19%
현물기부접수처 지침에 명시되어져 있어서	0	0%	2	2%
내부 혹은 외부의 관계에 의해서	59	50%	54	50%
기타	28	24%	19	17%
소계	117	100%	109	100%

⑦ 기부물품 사용 및 배분현황 (다중응답) : 수혜자 및 직접사용, 바자회, 유관기관 배포 순.

기부자의 본 의도대로 시설 이용자에게 직접 사용한다는 응답이 49%, 43%로 제일 많았고, 남은 경우 유관기관 배포 27%, 23%, 일부 바자회 등 수익성 사업에 사용한다는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로는 '인근 마을 회관이나 주민들과 함께 나눈다', '접수처 내에서만 소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용 및 배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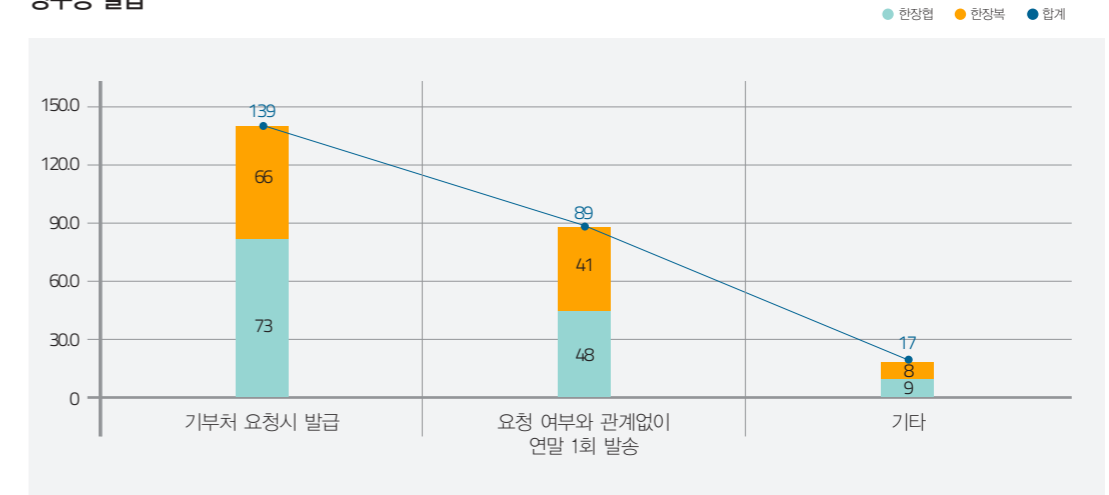


구분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접수처 거주인(수혜자) 및 직접사용	81	49%	67	43%
바자회 등 수익사업	19	11%	30	19%
유관기관 배포	45	27%	35	23%
기타	21	13%	23	15%
소계	166	100%	155	100%

⑧ 기부물품 영수증 발급(다중응답) : 93%가 기부영수증 발급

기부물품 영수증은 기부자 요청시 발급한다는 응답이 연말 1회 발송보다 높았다. 기타의견으로는 '요청시 발급 후 연말에 추가로 일괄 발송' 하는 경우가 있었다.

영수증 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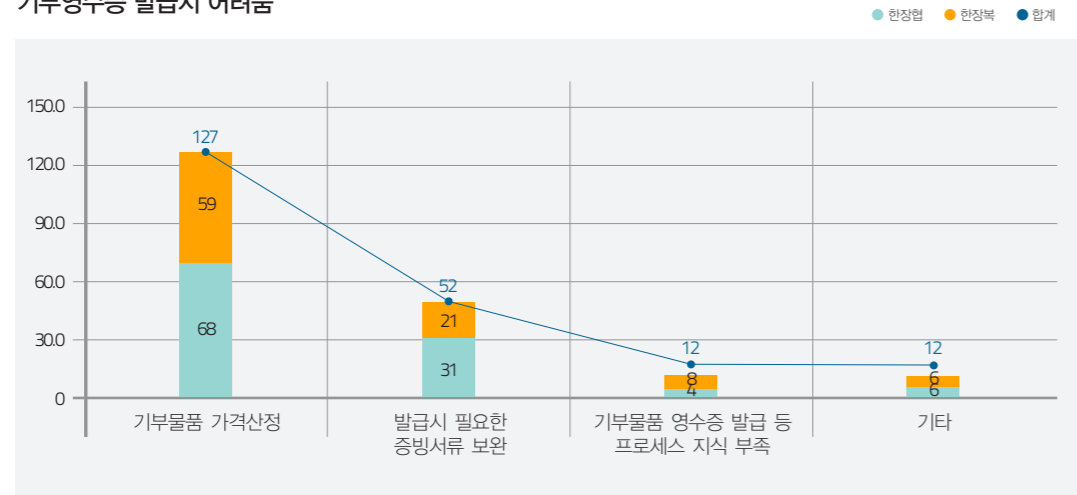


구분	한정협		한정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부처 요청시 발급	73	56%	66	57%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연말1회발송	48	37%	41	36%
기타	9	7%	8	7%
소계	130	100%	115	100%

⑨ 영수증 발급 시 어려움(다중응답) : 기부물품산정, 증빙서류 보완, 지식부족

기부영수증 발급시 기부물품의 가격산정의 어려움 호소가 62%, 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증빙서류 보완의 어려움 호소는 28%, 22%이고, 관련 지식부족의 애로 호소는 4%, 9%로 조사되었다. 기타 사항으로는 중고물품에 대한 가격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기부자가 원하는 금액으로 반영하는 경우, 동일 품목의 신상품 가격을 반영의 경우 등의 응답이 있었다.

기부영수증 발급시 어려움



구분	한정협		한장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기부물품 가격산정	68	62%	59	63%
발급시 필요한 증빙서류 보완	31	28%	21	22%
기부물품 영수증 발급 등 프로세스 지식부족	4	4%	8	9%
기타	6	6%	6	6%
소계	109	100%	94	100%

⑩ 현물기부물품 규정 유무 : 규정 유무는 6:4로 없는 곳이 더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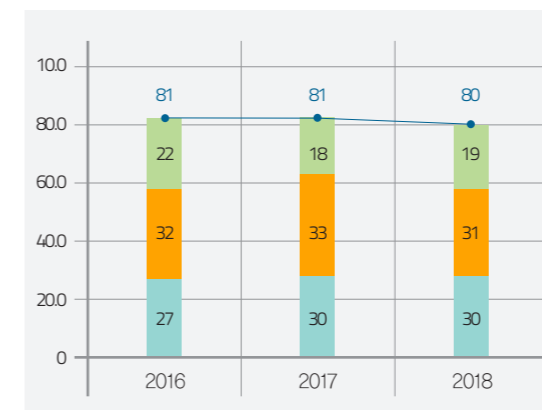
현물기부접수처내 현물기부물품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곳이 62%, 59%로 조사되었으며, 규정이 있다고 답한 접수처의 경우 '운영지침', '운영규정', '후원관리규정', '자원관리지침',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 근거한 규정' 등 규정내 간소하게 포함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구분	한정협		한장복	
	빈도	비율	빈도	비율
없다	51	62%	45	59%
있다	31	38%	31	41%
소계	82	100%	76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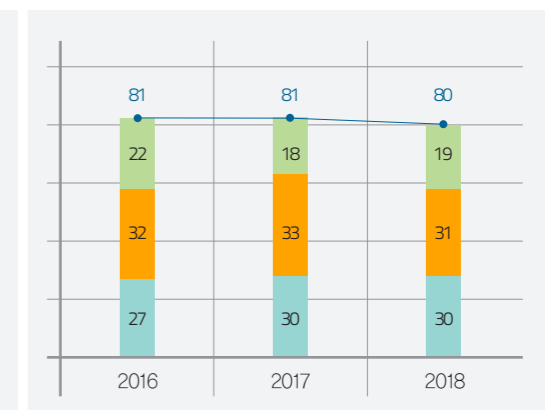
⑪ 최근 3년간 현물기부물품 후원 현황 (접수건수) : 연간 상시, 일평균 4건

현물기부품이 연중 상시 진행되고 있으며, 접수처별로 일평균 4건의 기증물품이 접수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물기부접수처별로 연중 현물기부물품이 접수되고 있으며, 기증물품에 대한 기록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16년 대비 2018년 현물기부물품은 꾸준히 상승한다는 정성적 의견을 주었으나, 정량적인 수치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원인은 품목과 접수건수로만 관리하고 있고 수량은 가격산정 시 반영할 뿐 별도 기록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기부영수증 발행하지 않는 현물기부물품은 기록에서 누락된다고 확인하였다.

한정협 접수 현황



한장복 접수 현황



구분	한장협						한장북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00건 미만	27	33%	30	37%	30	38%	27	41%	31	43%	31	42%
200-500건	32	40%	33	41%	31	39%	20	30%	24	33%	24	33%
500건 이상	22	27%	18	22%	19	24%	19	29%	17	24%	18	25%
계	81	100%	81	100%	80	100%	66	100%	72	100%	73	100%
평균건수	1,317		1,083		1,204		2,144		921		1,489	
최소건수	2		2		11		11		3		1	
최대건수	28,352		19,310		31,575		59,736		22,876		35,586	

⑫ 최근 3년간 현물기부물품 수령 현황(금액) : 한장협- 5천6백만원, 한장북- 8천5백만원

조사대상자(자원개발 담당자)의 기타 의견으로 매년 현물기부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이이며, 접수처 별로 담당자가 부재해 부과적인 업무과중이 있다고 조사되었다.

현물기부접수처별로 기록이 미흡하였으며, 소관부처에 보고하기 위한 기록만 존재하여 실제 현물기부 물품의 현황으로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기부영수증 발행액 5,000만원 이상의 현물기부물품 접수빈도가 2018년 기준 44%, 58%로 조사되었으며, 정성적 의견으로 매년 기부물품의 수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단위: 원〉

구분	한장협						한장북					
	2016		2017		2018		2016		2017		2018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2,500만원 미만	24	30%	24	30%	25	32%	11	17%	20	28%	18	25%
2,500~5,000 만원	23	28%	26	32%	19	24%	16	24%	11	15%	13	18%
5,000만원 이상	34	42%	31	38%	35	44%	39	59%	41	57%	42	58%
소계	81	100%	81	100%	79	100%	66	100%	72	100%	73	100%
평균금액	58,610,805		53,158,034		58,687,435		78,803,000		84,467,000		92,034,000	
최소금액	1,389,661		900,000		539,000		18,440,000		3,006,000		1,000,000	
최대금액	274,917,910		240,143,344		237,418,985		479,063,425		458,055,451		61,089,000	



3

현물기부 이슈와 문제정의

3. 현물기부 이슈와 문제 정의

전문가 회의와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비영리 단체의 현물기부 관련 어려움은 첫째, 부적절한 현물기부, 둘째, 물품의 보관과 유통 및 활용, 셋째, 물품의 가치측정과 회계처리로 요약할 수 있다.

1) 부적절한 물품 기부

부적절한 물품 기부는 필요 없는 물품이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수량을 받게 되는 경우, 물품의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적절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물품이 훼손 및 파손되어 온 경우 등이다. 이러한 경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기부자와의 장기적 관계를 고려할 때, 기증거절이 위험한 계기가 될 수 있어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과 복지관의 경우, 정부 평가항목에 기부금품 유치실적이 포함되기 때문에 기부수령에 대한 압박요인이 있었다. 기관에서 유통기한, 기부물품 가격산정, 사용여부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증이 결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부적절한 물품 수령은 물품 보관,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인력과 비용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물품 또한 제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건이 전달될 경우 오롯이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기부는 현금이건 물품이건 기부자에게는 특별한 결심이고 좋은 경험으로 남아야 한다. 기부물품이 비영리기관의 인력/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짐이 되는 결과를 원하는 것도 아니다. 기부자의 선한 의지를 존중하면서도 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기준이 필요하다.

① 기부할 수 있는 물품과 할 수 없는 물품의 기준이 필요하다.

너무 낡거나 훼손된 물품, 유통기한이 임박하여 기간 내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기부해서도 기부를 받아서도 안된다. '식품 등 기부활성화를 위한 법률'에서 식품과 몇몇 생필품 기부 시 유통기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관에 일정 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나 일정 수량 이상은 받을 수 없음을 사전에 공지할 수 있다. 현물 수령 전에 반드시 물품의 상태나 수량을 확인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② 기부물품에 대한 수령기관의 책무성 강조가 필요하다.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인데, 수령기관에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거절하는 것이 책임감 있는 행동이다. 이 경우 기부자의 의도가 잘 구현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추천하거나 연결한다면 기부자와의 관계지속도 기대할 수 있다. 기부물품 수령 뿐 아니라 거절 시 프로세스와 기부자 소통방식도 섬세하게 준비되어야 한다.

③ 기부자 및 일반시민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기부처에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인지 주의해야 한다. ‘누군가는 쓸 수 있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가 위험할 수 있다. 기부를 거절하는 단체는 ‘배부른 단체’가 아니라 ‘책무성 높은 단체’로 인식되어야 한다. 폐기 직전의 물품을 기부하여 수령기관에서 그 폐기비용을 물게 되었다면, 그 기부자는 다른 기부자의 기부금으로 본인 쓰레기를 처리하게 한 셈이다. 의도가 없을지라도 그것이 비윤리적인 행동임을 알고 주의해야 한다.

2) 물품의 보관, 유통 및 활용

기부물품을 기관으로 가져오는 일부러 비용과 인력이 발생한다. 설문대상 중 절반 이상이 직접 기부자에게 가서 물품을 가져온다고 응답했고, 10%정도는 기관비용으로 택배를 받고 있었다. 보관장소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적지 않았는데, 물품의 특성상 직원들이 동원되어 일일이 옮겨야 하기 때문에 기존 업무일정이 미뤄지기도 한다. 물품의 보관을 위해 별도 창고비용을 지불하는 기관도 있었다.

장애인 거주시설과 복지관에서는 협회나 인맥을 통해서 그때그때 남는 물품을 유통기한 내에 전달하고 있다. 공식 플랫폼 없이 단체 메신저 등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곳보다 재배분 받는 기관 담당자의 인맥에 따라 물품수령여부가 결정되고 있다. 기부물품 재분배가 주요업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물품을 보내주기 위한 배송비 예산을 잡을 수 없고, 재배분이 적절하게 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기관에서 바자회용으로 모은 물품이 바자회 후 남았을 때 처리방법이 없어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었다.

3) 물품의 가치측정과 회계처리

전문가 회의와 설문에서 기부물품 가치측정의 어려움이 가장 많이 거론되었다. 현장 실무자들은 기부물품 가치측정 관련 법을 찾기 어렵고, 막상 법조문을 읽어도 어떻게 적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난색을 표했다. 기부자가 개인일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법인일 때는 법인세법 시행령을 참조해야 하는데, 일반 법도 익

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법 그것도 시행령을 찾아보는 일이 쉽지 않다.

조항에 따르면 이런 저런 경우에 예외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시가’와 ‘장부가액’ 중 하나를 적용하면 된다. 그런데, 현장에서 ‘시가’와 ‘장부가액’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

‘시가’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즉 시장가격”이다. 만약 새 물품을 구입하여 기부하는 경우라면 구매영수증에 찍힌 가격이 ‘시가’이고 그 영수증을 증빙서류로 사용하면 된다. 그러나 기부물품이 중고일 경우, 물품의 종류나 사용연한에 따라 해당물품의 시장거래가 거의 없을 수도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가를 추정하거나 증빙하기 매우 어렵게 된다.

‘장부가액’은 기부하는 기업의 장부에 기재된 가액으로 기부기업이 발행한 장부가액 확인서등 장부가액을 확인하는 문서 또는 기업이 구입시 수취한 거래자료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기업 재고물품 중 판매가 어려운 것, 즉 시가가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되는 물품을 높은 장부가액으로 증빙할 경우 기관 담당자들이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장부가액의 입증은 기부법인(기업)에 있다.

기부자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기증품이 제작상품이나, 유통제품이나, 혹은 사용하던 중고물품이나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다. 개인이 사용하던 중고품을 기부할 때 가치증빙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실무자들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필요로 한다. 간혹 기부자 측에서 너무 높은 가치평가를 요구하는 경우, 그 가치에 따라 기부영수증을 발급해주게 되면 탈세의 공범자가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수령한 물품을 기록하고, 회계상 수입지출을 어떤 방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응답도 있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금액만큼 수입으로 잡고, 자산으로 등록했는데 바자회에서 더 낮은 가격에 팔리게 되면 장부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그 외 국세청 보고 시 기부물품을 품목별로 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도 과도한 행정일 수 있다. 한장협과 한장복 설문응답 153개 기관의 2018년 기부물품 건수 평균이 1,342건인데, 1,000건 이하가 137개 기관이었다면 5,000건 이상도 11개 기관이 되었다. 가장 높은 건수는 3만5천 건이다. 이런 경우 품목별 등록이 불필요한 행정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4

해결 방안과 개선 과제

4. 해결 방안과 개선 과제

아름다운가게나 굿월스토어는 법적 검토에 기반한 실무지침과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기관 나름의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반면 많은 비영리단체와 사회복지기관이 지침과 정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물기부 전문기관인 푸드뱅크, 아름다운가게, 굿월스토어가 경험과 자료를 공유하거나 기부물품 유통과 판매관련 도움을 주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물기부 실무진행 시 걸림돌이 되는 법제도 개선, 그리고 현물기부와 수령단체에 대한 기부자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한 현물기부풍토를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실무적 해결방안 : 현물기부 매뉴얼

현물기부 매뉴얼은 단체들이 겪는 곤란함을 피할 수 있게 도우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매뉴얼에 담겨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매뉴얼 예시

구분	내용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령물품 기준 : 거절의 이유, 다른 기관 안내 가치평가 / 증빙 기준 배송비 및 보관관련 정책 : 비용부담기준 등
현물기부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령여부 결정을 위한 절차의 필요성과 내용 안내 물품의 종류 / 수량 / 상태 확인요령 물품가격산정 기준 / 증빙서류 / 영수증 발행여부 거절할 경우 안내방법 배송과 보관업무 및 비용부담자 결정 기증관련 기부자의 조건 확인
현물기부 유통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기증품 사용관련 윤리 남는 물품의 처리방법 바자회 진행시 유의점 기록 및 관리방법
회계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계상 물품 등록방법 지출 기장 방법 : 판매 / 사용 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부자 예우원칙 매뉴얼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처리원칙 및 참고자료

② 수령물품 기준

기관에서 수령 가능한 물품/불가능한 물품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면,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한 기부물품 수령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관에 필요하지 않지만 다른 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이라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하는 절차를 매뉴얼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증불가 물품은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너무 짧게 남은 물품, 재사용이 불가할 정도로 낡았거나 손상된 물품이 있다. 그 외에도 배송이나 설치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와 기관에서 일정기간 내에 사용할 계획이 없는 물품이다. 필요시 이 기준을 물품별로 자세하게 기술할 수 있다. 아름다운가게의 기증불가물품 안내문과 식품 등 기부활성화법률에 따른 기증 가능한 유통기한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별첨1,참고)

③ 가치산정기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부자가 개인/법인인 경우, 기부수령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에 따라 기부금영수증금액과 기부단체의 세법상 취득가액이 각각 다르다(세법). 또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상 인식할 회계상 취득가액이 다르다(회계). 예를 들어 기부금단체가 현물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자에게 발행하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금액과 기부물품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취득가액과 회계상 취득가액(=기부금수익)에는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³⁾

기부자	기부수령단체	세법		회계 ⁴⁾ (재무제표인식)
		기부금영수증 ⁵⁾	단체의 취득가액 ⁶⁾	
법인	법정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기부받는 시점의 시가	기부받는 시점의 공정가치
	지정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기부받는 시점의 공정가치
개인	법정	기부자의 기부 당시 장부가액	기부받는 시점의 시가	기부받는 시점의 공정가치
	지정	기부 당시 Max(시가,장부가)	기부자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기부받는 시점의 공정가치

일반적으로 기부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기부할 경우 첨부된 (구매시)영수증 금액으로 기부금영수증가액을 산정하면 된다. 구입 영수증이 없을 경우 시가확인을 위한 내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부자가 물품을 직접 생산하여 기부할 경우에는 원가명세서, 장부가액 확인서 등을 함께 받아서 그 가격을 사용하면 된다. 즉 기부기업 측에서 정해진 가격기준을 받으면 된다.

기부받은 현물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거나 매각되는 경우라면 매출이익(=매출-취득가액)을 계상하거나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기부금영수증가액과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한다. 동시에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상 취득가액은 공정가치(일종의 시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④ 기증받은 물품의 자산등록 및 회계처리⁷⁾

일반적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지만, 발행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후 사용하게 될 물품은 가치를 측정하여 '기부금수익'으로 기록해야 한다. 즉 기부금 모금액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의 금액이 일치되어야 한다. 또한 기부물품의 수불부를 작성하여 취득내역 및 사용내역을 명확히 기록하고, 그 내역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여 관리해야 한다.

3) 특수관계가 없는 기부자로부터 기부 받음을 가정한다.
 4)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제2항
 5)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6)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5의3호, 제7호
 7) 기획재정부 고시 공익법인회계기준 및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참조

〈현물기부금 관련 회계처리 예시〉

1. 현물기부금의 수익인식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은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⁸⁾ 한다.
만약, 2018년 12월 A기관으로부터 기부 약정을 받고, 실제 2019년 2월에 기부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기부를 받은 2019년 2월에 기부금 수익을 인식한다.

〈2018.12〉
회계처리 없음
〈2019.2〉

(차) 자산	XXX	(대) 기부금 수익(공익목적사업수익) XXX
--------	-----	--------------------------

2. 현물기부금의 측정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현물을 기부 받을 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⁹⁾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공정가치’란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공익법인회계기준에서는 공정가치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유형자산이나 유가증권의 경우 대부분 취득시 감정평가를 수행하여 공정가치의 확인이 용이하고, 상품, 중고물품 등 재고 자산의 경우에는 기부시점의 자산의 시장가격,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등을 공정가치의 측정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자산별 공정가치 평가방법의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8)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제1항
9)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제2항, 제33조 제2항

－ 공정가치 평가방법 예시¹⁰⁾

현물 기부자산 종류	공정가치 평가방법 예시
유형자산	시장가격. 다만,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 또는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
재고자산, 기타물품	시장가격, 유사한 자산의 시장가격 등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	보고기간 말 현재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공신력 있는 외국의 증권거래시장의 종가
시장성 없는 지분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방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평가한 금액 공신력 있는 독립된 유가증권 평가 전문기관이 합리적인 평가모형과 적절한 추정치를 사용하여 신뢰성 있게 평가한 금액
시장성 없는 채무증권	미래 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
시장성 없는 수익증권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매매기준가격

※ 재능기부의 수익인식¹¹⁾

현금이나 현물이 아닌 재능이나 서비스를 기부 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능이나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부금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3. 현물기부금 회계처리 및 주식사항 기재

(1) 현물기부금 수령 시

가. 회계처리

기부금은 실제 기부를 받은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에 공익목적사업수익의 기부금수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관련 정보를 주식사항으로 기재한다¹²⁾.

(차) 자산	XXX	(대) 기부금수익(공익목적사업수익) XXX
--------	-----	-------------------------

다만, 기부금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¹³⁾.

10) 알기 쉬운 공익법인회계기준 매뉴얼 p.195
11)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 p.130
12)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5조 제4항, 제41조 제5호
13)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 제4항

(차) 자산	XXX	(대) 기본순자산	XXX
--------	-----	-----------	-----

나. 주식사항 기재

공익법인은 기부받은 현물자산의 정보를 주식으로 기재해야 하며, 해당 주식은 계정과목 별로 합산해서 공시하고, 주요 기부자산이나 기부자의 경우에 한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내역	금액	기부자
토지	XXX	(주)AA
건물	XXX	(주)BB
차량운반구	XXX	(주)CC

(2) 현물기부금 사용 시

가. 기부한 경우

공익법인이 현물로 수령한 기부물품을 수혜자 또는 수혜단체에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공익목적사업의 사업수행비용에 해당하며, 사업수행비용은 세부사업별로 추가 구분한 정보를 운영성과표 본문에 표시하거나 주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¹⁴⁾.

(차) 사업수행비용(분배비용)	XXX	(대) 자산	XXX
------------------	-----	--------	-----

나. 매출한 경우

현물로 수령한 기부물품에 대하여 정기 바자회를 통한 판매 등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할 수 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매출	XXX
매출원가	XXX	자산	XXX

14)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7조 제4항

다. 처분한 경우

현물로 수령한 기부물품을 매각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할 수 있다.

(차) 보통예금	XXX	(대) 자산	XXX
처분손실(또는 이익)	XXX		

2) 실무적 해결방안 : 거절하거나 남은 물품 활용 네트워크

① 타 기관 연계

유통기한이 넘었거나 너무 짧게 남은 물품, 재사용이 불가하게 낡았거나 손상된 기증불가물품 외에 기관에서 사용용도가 없거나 수량이 너무 많아서 거절하게 될 경우 다른 기관을 안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하면 '거절'이 아니라 '더 적절한 곳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부자와 기관이 더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물품별 연결기관을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푸드뱅크는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식품 뿐 아니라 위생용품, 내구소비재, 의류/폐선잡화까지 기부를 받아 적절한 기관에 전달하고 있다. 기관에 수요가 있지만 수량이 너무 많을 경우 관련 협회로 연결할 수 있다. 물품의 품목이 다양하거나 중고인 경우, 수요처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면 판매금액으로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아름다운가게, 굿윌스토어 등으로 연결할 수 있다.

물품 사용 후 남은 경우, 바자회 진행 후 남은 물품의 활용을 위해 기부수령 시 '소중한 기부물품이 유통기한 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요기관 재분배, 자선가게 판매 등으로 연결하는 것에 동의' 를 받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미 우리 기관에 기부물품으로 등록된 물품을 재분배 할 때, 기관 간 증빙서류를 주고받되 사용은 우리 기관의 장부에서 사용된 것으로 기장하고, 재 배분 받는 기관에서는 이미 기부영수증이 발급이 되었기 때문에 물품의 입고는 기록으로 남기되 단가를 0으로 기재하고 기부금영수증을 재발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② 재분배 네트워크 구축

현물기부가 빈번한 복지관이나 시설의 경우 담당자 1인이 모든 물류관리를 해야 하는 행정부담이 크다. 직접 물품을 가지러 가야하는 경우가 10번 중 5번에 해당하고, 기부 건수와 수량을 일일이 파악해 사진을 찍고 라벨을 붙여 관리 시스템에 입력해 보관하고 출고관리도 해야 한다.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처럼

개별 기부물품을 일일이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부물품을 입력하는 방식도 제각각이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의류를 50벌 기증했을 때, 1건 50개로 등록하는 곳도 있고 1건으로만 기재하는 곳도 있다. 이렇게 관리 기준이나 등록방법, 보관장소 등에 대한 기준 제시가 필요한데, 현물기부 제도개선 네트워크를 통해 올해 발간되는 현물기부 가이드가 1차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차적으로는 이렇게 개별 기관이 부담해야 할 업무를 네트워크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가게나 굿윌스토어와 같이 이미 시스템과 노하우가 있는 곳의 시스템을 활용한다거나 제3의 네트워크 등을 통해 권역별 지역별로 현물기부를 재분배 하는 곳이 있다면 개별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효율성,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기관별로 매뉴얼을 참고하되, 물품보관 장소가 부족하나 애매한 기준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핫라인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 외 복지관 관리시스템에서는 기부물품 건수, 수량, 사용량만 입력할 수 있는데 필요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3) 법제도 보완 방안

현물기부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별도의 법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① 비영리법인 기부물품 등록 합리화

현행 자산 3억 이상, 모금액 5억 이상의 비영리공익법인은 매년 국세청에 공시를 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2019년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결산서류 공시가 모든 공익법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¹⁵⁾.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 종교법인 등은 소관 법률에 의해 공시 예외이거나 중복해 공시되기도 한다. 현물기부물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동시에 공시 방식을 일원화하여 행정적 업무간소화가 함께 진행 되어야 하겠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 승인을 받지 않아도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했거나 기부금 수령 대상이 아니었던 곳들이 2019년~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를 신규로 등록 승인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기관들이 현물기부에 대한 별도 보고를 시작하게 된다.

15) 2019.8.29.일자 국회 발의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 공익법인 의무공시 대상 확대(안 제50조의3제1항 및 제78조제11항) 종전에는 결산서 등 공시의무를 종교법인을 제외한 일정 자산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에만 부과했던 것을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에 부과하는 것으로 확대하되, 일정규모 미만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식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함.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

기부금단체 범위 조정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지정기부금단체에 추가
-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을 법정기부금단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
- ‘정부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를 법령에 따라 당연 지정되는 지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 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 ‘기타 지정기부금단체 등과 유사한 단체’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시행규칙 별표6의2)에서 지정 심사 후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

* 2018. 2. 13.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영 시행일 이전에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20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출처 : 서희열(2018), “기부금관련 세법개정 내용과 기부금단체의 대응방안”, 2018년 기획연구 보고서, p.107-156,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

② 바자회 등 현금화 과정의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필요

전국의 현물기부 접수 기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도 관련법에 의거하여 기부영수증을 발행한 후 수혜자에게 배분한다. 이때 배분하지 못하고 남은 유휴 기증물품을 바자회 등의 방식으로 현금화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기부영수증 발행액과 바자회 후 수익액의 차액이 발생하는데 대부분 차대변을 맞추지 못하여 바자회 수익을 별도로 추가 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상당의 현물기부물품을 받고 100만원의 기부영수증을 발행했다. 이중 절반인 50만원 상당을 수혜자에게 배분을 하고 배분하지 못한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바자회를 통해 판매하였는데 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회계상으로 20만원의 처분손실이 발생하거나 바자회판매수익을 매출로 인식하는 경우 회계상 이익이 30만원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재무상태표의 자산은 현금 30만원으로 동일하게 표시되지만 운영성과표에는 수익과 비용이 과다하게 표시되어 금전/물품 흐름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결국 손실을 인식하거나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는 차대변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판매수익 30만원을 별도의 기부수입으로 잡는 수밖에 없다. 법적 문제는 없지만, 금전/물품 흐름이 회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기부물품 수입 및 판매 시 회계처리〉

1) 수입과 배분 시 회계처리

기부물품 수입시

차 변 (Debit)		대 변 (Credit)	
기부물품	1,000,000	현물기부수입	1,000,000

물품 배분시

차 변		대 변	
분배비용	500,000	기부물품	500,000

2) 처분손실을 직접 드러내는 경우

기부물품 판매를 자산의 처분으로 인식하는 경우

차 변		대 변	
보통예금	300,000	기부물품	500,000
처분손실	200,000		

3) 매출원가로 처리하는 경우

기부물품 판매를 기부금으로 인식하는 경우

차 변		대 변	
보통예금	300,000	매출	300,000
매출원가	500,000	기부물품	500,000

또 하나의 방법으로 기부물품의 공정가치를 순실현가능가치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예상판매가격에 판매 부대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재화의 가치로 인식하는 것이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발행 금액과 단체의 장부상의 물품가액은 차이가 난다. 회계상으로는 기부물품의 수령시 예상판매가격에서 판매부대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부물품가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으로 수입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는 기부물품의 수취시점에 실질가치로 인식하므로 금전 및 물품의 흐름이 적정하게 반영된다고 할 수 있으나 세법상으로는 기부물품의 가액을 시장가액, 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고 되어있어 실제 기부

금영수증 발급액과 회계상의 기부물품수입액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시가 10만원으로 확인된 원피스를 기증받은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자에게 10만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후, 기존 판매 기록을 통해 유추해 보았을 때 통상 판매가가 5만원, 판매를 위해 발생한 부대비용이 1만원이라면 기부물품가액을 4만원으로 기재될 수 있다. 다만 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면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과세가액이 왜곡되지 않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text{기부물품가액} = \text{판매시 수취할 수 있는 예상금액} - \text{판매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해설서

비현금기부금 수익인식 기준

(1) 현황

- 현행 회계실무에서는 현물이나 서비스의 형태로 기부를 받을 경우 그 인식여부나 측정기준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
- 현물기부의 예로는 사회복지기관이 바자회에 내놓을 물품을 직원이나 지역주민으로부터 기증받는 경우가 있음

(2) 원칙

-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그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하여 서비스를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아니함(제27조)
- ‘공정가치’는 합리적인 판단과 거래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함
- 일반인의 무료봉사활동은 서비스기부에 해당하며 비영리조직에게 효익을 주는 것이 명확하지만 그 가치를 충분히 신뢰성 있게 측정하기가 어려우므로 수익인식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
 - 비교적 측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회계사, 의사, 정기간사, 목수 등 전문가로부터 제공받는 전문용역의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기부를 수익으로 인식하는 대안을 고려하였으나, 실무에서 전문용역의 경우에도 신뢰성 있는 가치의 측정이 어렵다는 의견과 성격상 일반인의 자원봉사와 구분할 수 없으므로 측정의 대상이 아닌 비재무적정보라는 의견이 많아 수익인식대상에서 제외함

〈현금 및 비현금 기부금 수익인식기준 요약〉

구분	인식시점
현금및현금성자산	기부받은 시점
기타자산(현물기부) * 공정가치로 측정	
회비(비강제)	권리발생 시점
회비(강제)	

*서비스기부의 경우 수익인식 대상에서 제외

[출처 : 한국회계기준(2017),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해설서", p.53-54]

기관에 따라 관련 법에 대한 이해와 적용이 상이한데, 국세청 질의에 대한 답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준비된 물품을 댓가를 받고 제공하는 바자회 행사는 기부금품모집법의 등록대상이 아니다. 기부금품모집법은 댓가 없이 현물이나 현금기부를 불특정 다수에게 모집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나, 바자회에 사용할 물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기부요청 하고, 그 목표액(기부영수증발행기준)이 천만원이 넘는다면, 기부금품법에 등록해야 한다.
- 현물기부자에게는 기부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바자회 구매자에게 구매금액에 대해 기부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 다만, 낮은 가치의 물품을 경매 등의 방식으로 정상가액(시가보다 30% 이상 높은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매한 경우 차액분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가 100만원이라고 증빙된 물품을 자선경매를 통해 200만원에 판매되었다고 하면, 정상가 130만원과의 차액 70만원을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 계속 반복적으로 운영하지 않거나(즉 사업성이 없거나), 판매자체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수익성이 없는 바자회는 통상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지 않거나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 이하의 거래는 통상 부가가치세도 비과세 또는 면제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9. 2. 12.〉

③ 기부품 가치산정 관련

법인의 기부물품에 대한 가치는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부기업으로부터 증빙을 요청하면 된다. 기업 재고, 기업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컴퓨터, 책상, 의자)의 경우 기업측에 거래명세서 등 수량과 가격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기업이 물건을 구입하여 기부할 경우 구입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측에서 사용하던 중고물품이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가확인이 필요하다. 개인이 기증하는 중고물품도 마찬가지이다.

중고물품의 시가를 확인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온라인 중고거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판매자가 원하는 가격대로 실제로 팔렸는지 확인할 수 없고 사이트마다 가격의 편차가 큰 경우도 있다. 가장 곤란한 경우는 해당 중고 물품의 거래가 거의 없는 경우이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다.

중고물품 판매를 업으로 하는 '아름다운가게'의 경우 물품별, 상태별 표준을 만들었는데 이는 전국 매장에서 전년도 해당 상품의 실제 판매가를 기준으로 한다. 만약 아름다운가게가 그 가격기준을 공유할 수 있다면 다른 비영리기관에서 중고물품 시가 확인자료로 유용할 것이다.

개인 사업자들이 세금회피를 위해 현물기부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유통업체 A는 개인사업자들이 비영리단체에 기부하기 위한 물품을 판매하는 회사이다. A는 사업자들에게 시가의 절반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거래명세표는 시가로 발행해준다. 개인사업자들은 본인이 낸 현금의 두배 가치의 기부금영수증을 받게 된다. A로부터 현물기부수령을 제안받았던 비영리기관은 이를 규제하는 법을 찾지 못했다.

④ 기부금품 관련 세법 개정의 필요성

(1) 기부물품의 회계와 세법상 취득가액의 일치

물품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기부수령단체가 법정기부금 단체인지 지정기부금 단체인지에 따라, 기부수령단체의 세법상 취득가액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인식할 회계처리 가액이 다르다. 이처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기부금수령단체가 인식하는 가액이 세법과 회계가

각각 상이함에 따라 실무자는 물품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장부에 반영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몹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반면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의 2%(2019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5%로 인상 예정)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실무자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¹⁶⁾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와 세법상 기부물품 취득가액을 일치시키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세법상 기부영수증가액과 취득가액의 시가 통일

기부단체는 기부물품의 기부당시 시가(100)가 장부가액(900)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개인 또는 기부법인의 장부가액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부물품의 실질가치(100)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액이 과다(800)하게 발급되어 기부금세액공제 또는 기부금 손금산입이 과다하게 공제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기부물품의 기부당시 시가(1,000)가 기부자의 장부가액(또는 취득가액, 100)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에도 기부물품의 세법상 취득가액은 기부자의 장부가액(100)이므로 이를 기부받자마자 시가(1,000)로 매각하더라도 법인세가 과세되는 양도차익은 900(=매각대금1,000 - 취득가액100)에 해당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부자(법인)가 기부물품을 취득한 후 기부하는 시점까지의 시가 증분(900)에 대한 세금을 모두 기부단체가 떠안게 되는 문제가 발생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부 당시의 시가로 일원화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4) 인식개선 캠페인

기부자들에게 현물기부는 재고 처리, 혹은 집안 정리와 기부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기부를 하는 과정에서 기부자들은 기부를 받는 기관/개인의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 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기부를 받기 곤란한 경우 기부자와의 소통이 매우 어렵다. 기부하겠다는 선한 의지를 거절한다는 부담이 기관과 실무자에게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현장에서 발생하는 양자간 이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부자와 기관의 인식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인식개선 캠페인은 건강한 현물기부문화는 기부자와 수령기관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조성하고 기부자와 수령기관에 필요한 지식의 확산을 통해 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물기부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16) 법인세법 제75조의4 제1항 제1호 가목

① 현물기부 수령단체 책무성 가이드라인 발간

현물기부를 받는 단체에서 기부자의 소중한 물품이 의도에 따라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

- 현물기부를 받기 전 기관은 관련된 정책과 실무 매뉴얼을 갖춘다. 기관의 정책과 실무 매뉴얼은 현행 법을 준수하고, 기관의 미션과 현실을 반영한다.
- 기관은 현물기부를 적절하게 받기 위해 필요한 인력, 예산,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
- 기관에 수요가 없거나 보관/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적절한 물품은 기부수령을 거절한다.
- 기부자에게 최선을 다한다. 기부가 성사되지 못할 때라도 기부자가 선한 의도를 완수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돕는다.

② 현물기부 모범사례 홍보

기부물품을 사전에 검수하고, 원하는 조건을 미리 확인하는 등 기관에서 경험한 좋은 현물기부사례 홍보를 통해 기부자들이 현물기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견지해야 할 태도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별첨

〈별첨1. 현물기부 수령 기준〉

1.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및 배분기한(사용기한이 표기된 물품에 한함)

구분	종류	모집 가능기한	사용기한에 따른 이용자 배분기한	
			개인	사회복지 시설·단체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최소 30일 이전	최소 15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최소 60일 이전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9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최소 60일 이전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보건복지부 2019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안내]

2. 아름다운가게 현물기부 가이드

*1년 단위로 가이드는 변경됨

더 큰 나눔을 위해 판매 가능한 물품을 기증해주세요.
 일손이 부족하여 별도로 세탁, 수선을 하지 못하므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좋아요.
 재판매가 어려운 기증품은 기부영수증 가액 산정에 반영되지 않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부영수증은 2~3주이내 발행되며 개인은 문자알림, 사업자는 메일 발송됩니다.
 기증품은 센터로 입고된 후에는 다시 찾기 어려우므로 기증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품목별	기증가능	기증불가
전체	성인명이 들고 이동이 가능한 부피와 무게의 물품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의 물품	구멍, 보풀, 오염, 곰팡이(악취, 고장, 파손된 물품)
주방 생활잡화	주방용품(식기류, 냄비, 미사용 수저세트) 생활용품 미개봉 식품류, 생활세제(밀봉포장 &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미사용 침구류 악기류(바이올린, 첼로, 기타 등) 소형가구 소형 운동기구 인테리어 소품	제기류 사용한 침구류(이불, 베개, 방석, 쿠션 등) 카펫(대형), 대나무뚫자리 라꾸라꾸 침대, 매트리스 스키용품, 볼링용품, 관악기류(입으로 부는 악기-리코더, 단소 등) 의료기기(환자용 침대, 변기, 보행보조기, 목발 등) 건강보조 식품류, 의약품 대형화분(30cm 이상), 교자상, 전신거울 일회용품(종이컵, 젓가락, 접시, 면도기 등), 옷걸이 인화성물품(부탄가스,ライター, 캠핑용 가스) 동물박제(동물보호법)
패션 미용 잡화	가방/신발 선글라스, 안경, 시계 유통기한 6개월 이상 미개봉 화장품 향수 액세서리(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지갑, 벨트, 파우치, 머플러, 스카프, 모자, 넥타이, 장갑	개봉했거나 유통기한 6개월 미만 화장품

영유아 잡화	장난감, 오염없는 카시트, 전동자동차, 쿠션매트, 인형 자전거, 킥보드, 유모차(바퀴 & 손잡이 상태 양호) 미개봉 일회용 기저귀 미사용 문구류	아기 퍼즐매트, 범퍼침대 아기접이식 침대 (대형)미끄럼틀, 주방놀이, 고무딱지 아기변기/욕조, 젓병소독기, 유축기, 치발기
의류	성인, 아동 의류	수선, 리폼 및 특정 로고가 박힌 단체복 교복, 도복, 단복, 군복, 유니폼 착용했던 속옷 및 내의류, 잠옷, 레깅스, 양말, 수영복 3세 이하 영유아 의류 양복(상, 하의 셋트)
도서 음반	일반 단행본 최근 7년 이내 출간된 아동도서(단행본, 전집, 영어도서 등) 월간지, 전공서적 외국어 원서 국내외 CD, DVD, LP 최근 1년 이내 발행된 수험서, 참고서	교과서, 백과사전, 제본도서, 언어사전 어학용 CD, DVD 성인도서, 성인/불법복제 DVD 만화책 종교서적, CD 비디오, 카세트테이프 학습지
가전	노트북, 데스크톱, 모니터, 컴퓨터 주변기기, 태블릿(저장장치 포함) 소형가전(믹서기, 커피메이커, 커피포트, 토스터기, 다리미, 드라이기, 소형안마기 등) 식기건조기, 진공청소기, 제습기, 공기청정기 * 작동이 가능한 제품만 기증 가능합니다.(제조년도 7년 이내)	제조년도 7년 초과한 가전제품 설치가 필요한 대형가전제품(에어컨, 온풍기, 정수기, 연수기, 보일러, 가스레인지 등) 연식이 오래된 가전제품(브라운관TV, 프로젝션TV, PDP TV,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 110V가전 등) 옥매트, 온수매트, 가습기, 프린터, 복합기, 스캐너, 음식물 처리기 전기장판, 전기이불 기증 가능/불가능 물품은 지역별, 물품 상태등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 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2. 현물기부 관련 법〉

1.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6조,33조

[시행 2018. 1. 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35호, 2017. 12. 7., 제정.]

제26조(기부금 등의 수익인식과 측정)

- ① 현금이나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실제 기부를 받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② 현물을 기부 받을 때에는 수익금액을 공정가치(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이 교환되거나 부채가 결제될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측정한다.
- ③ 납부가 강제되는 회비 등에 대해서는 발생주의에 따라 회수가 확실해지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할 수 있다.
- ④ 기부금 등이 기본순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기본순자산의 증가로 인식한다.

제33조(자산의 평가기준)

- ①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한다.
- ② 교환, 현물출자, 증여,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 ③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한다. 이 경우 회수가능액은 다음 제1호와 제2호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순공정가치: 합리적인 판단력과 거래 의사가 있는 독립된 당사자 사이의 거래에서 자산의 매각으로부터 수취할 수 있는 금액에서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금액
2. 사용가치: 자산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④ 과거 회계연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하였다면 자산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상차손환입으로 인식한다. 다만,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공익법인회계기준 실무지침서(p.89)

[참고]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 공정가치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의미함
-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거래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실현가능액이나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의 감정가액을 사용할 수 있음
-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또는 건물이나 차량 등에 대한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정부의 각종 고시금액이나 시장의 객관적인 시세표 등이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재평가액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공정가치와 대체로 유사한지에 대하여는 재평가대상 자산의 금액적 중요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3. 법인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096호, 2018. 12. 31, 타법개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 12. 24.>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 중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순차적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그 외의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12. 24.>

구분	손금산입한도액
1.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소득은 제외하고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제13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50퍼센트
2.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제5항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포함한다)]×10퍼센트(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퍼센트로 한다)

제75조의 4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8. 12. 24. 신설)

1. 기부금영수증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 주요사항을 적지 아니하고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 (2018. 12. 24. 신설)
 - 가. 기부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금액[영수증에 실제 적힌 금액(영수증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가 기부금을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해당 금액으로 한다)과 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 (2018. 12. 24. 신설)

- 나.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등 가목 외의 경우: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00분의 2 (2018. 12. 24. 신설)
2.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제112조의 2 제1항에 따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 (2018. 12. 24. 신설)
- ② 제1항 및 제112조의 2에서 “기부금영수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수증을 말한다. (2018. 12. 24. 신설)
1.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018. 12. 24. 신설)
 2.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 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영수증 (2018. 12. 24. 신설)
 -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보고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장부의 작성·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신설)
 - ④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 12. 24. 신설)

[시행 2019. 7. 1] [대통령령 제29933호, 2019. 7. 1, 일부개정]

- 제36조(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9. 2. 12.>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 ②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가지급금 등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사업연도의 기부금으로 하고,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법인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 [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9조로 이동 <2019. 2. 12.>]

제37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에는 법인이 개인 또는 다른 법인에게 자산을 기증하고 이를 기증받은 자가 지체없이

- 다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개정 2005. 2. 19., 2019. 2. 12.>
- ② 법 제24조제3항제2호의 국방헌금에는 「예비군법」에 따라 설치된 예비군에 직접 지출하거나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를 통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을 포함한다. <개정 2005. 2. 19., 2011. 3. 2., 2016. 11. 29., 2019. 2. 12.>
- ③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구분하여 작성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명세서를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31., 2005. 2. 19., 2008. 2. 29., 2010. 12. 30., 2019. 2. 12.>
- [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36조로 이동 <2019. 2. 12.>]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3호, 2019. 2. 12, 일부개정]

-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①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해당 선박·항공기·차량·기계장비 및 「입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입목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말하되,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가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시가표준액에 따른 가액을 순차로 적용한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3. 12. 30., 2005. 8. 5., 2010. 2. 18., 2010. 9. 20.>
- ② 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1999. 12. 31., 2002. 12. 30., 2008. 2. 22., 2011. 7. 25.>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2. 판매용이 아닌 서화·골동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형재산의 평가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전문분야별로 2인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한다.
- 가. 서화·전적
- 나. 도자기·토기·철물
- 다. 목공예·민속장신구
- 라. 선사유물

마. 석공예
 바. 기타 골동품
 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미술품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③ 법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제50조제7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제목개정 2010. 2. 18.]

5. 소득세법

[시행 2019. 1. 1] [법률 제16104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사업자가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8. 12. 31.>

②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8. 12. 31.>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3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시행 2019. 4. 1] [대통령령 제29523호, 2019. 2. 12, 일부개정]

제81조(기부금과 접대비등의 계산) ①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을 가지급금으로 이연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그 지출한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본다. <개정 2010. 2. 18.>

② 사업자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실제로 이를 지출할 때까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자가 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기부금 또는 접대비등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말한다)에 의한다. 다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서는 장부가액으로 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증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8., 2010. 12. 30., 2014. 2. 21., 2019. 2. 12.>

④ 사업자가 법 제34조에 따른 기부금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및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기부금을 순서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신설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8. 2. 22., 2009. 2. 4.,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정치자금기부금”이라 한다) 또는 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이월결손금(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삭제 <2010. 12. 30.>

2의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제13항에 따른 기부금(이하 이 항에서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30/100

3.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다음 가목 또는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합계액(이하 이 호에서 “기부금등합계액”이라 한다)을 공제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순서로 공제한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10/10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20/10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기부금등합계액) × 30/100

⑤ 법 제3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원봉사용역(이하 “자원봉사용역”이라 한다)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신설 2003. 12. 30., 2010. 2. 18., 2010. 12. 30., 2019. 2. 12.>

1.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일수에 5만원을 곱한 금액(소수점 이하의 부분은 1일로 보아 계산한다). 이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본인의 봉사분에 한한다.

$$\text{봉사일수} = \text{총 봉사시간} \div 8\text{시간}$$

2. 당해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

⑥ 법 제34조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해당 자원봉사용역(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 이전에 같은 지역에서 행한 자원봉사용역을 포함한다)은 특별재난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위임을 받은 단체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포함한다)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부금확인서를 발행하여 확인한다. <개정 2010. 2. 18., 2010. 12. 30., 2013. 2. 15., 2019. 2. 12.>

⑦ 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해당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사망한 이후 유류분(遺留分)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신탁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여 이를 반환받은 경우에는 그 유류분 권리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유류분 권리자에게서 추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2. 21.>

1.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날 현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거주자가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부금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2.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받은 금액/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을 반환받은 시점의 신탁재산가액

6. 부가가치세법 26조

[시행 2019. 7. 1] [법률 제16101호, 2018. 12. 31, 일부개정]

제26조 면세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희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별첨3. 알아두면 좋은 사이트〉

구분	업체명	주소	세부내용
법률	법제처	www.moleg.go.kr	각종 법률 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각종 법률 조회
	국세청	www.nts.go.kr	대표번호 126 현물기부 Q&A 소득공제
연말정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연말정산 신고 기부금 등재
회계	삼일아이닷컴	www.samili.com/nonprofit/	비영리 회계와 세무
유관기관	아름다운가게	www.beautifulstore.org	현물기부 관련 사례 및 장부기산정 내용
	굿윌스토어	http://www.goodwillsongpa.org/	현물기부
	보건복지부 전국푸드뱅크	www.foodbank1377.org	식품, 생활용품 기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www.hinet.or.kr	전국 장애인시설 대상 현물기부물품 신청 및 배분
	한국장애인복지관 협회	www.hinet.or.kr	전국 장애인복지관 대상 현물기부물품 신청 및 배분
	서울시장장애인복지관 협회	together-seoul.org	서울소재 장애인복지관 대상 현물기부물품 신청 및 배분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sasw.or.kr	사회복지 관련 각종 정보 기재
	한국사회복지사협회	www.welfare.net	공모사업 및 배분사업 관련 정보 기재
사회공헌	CSR Forum	www.csrforum.org	기업 사회공헌 근무자, 관심자들의 학습 모임, 페이스북 연동

* 국세청 세법해석 질의 안내 https://www.nts.go.kr/info/info_01.asp

* 국세청 상담사례 http://www.samili.com/opt/Sangdam/NtsSangdam.asp?div_cate=opt

협력한 사람들

- 김은경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팀장)
- 김준혁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 센터장)
- 박상용 (서울특별시광역푸드뱅크센터 팀장)
- 장윤주 (아름다운재단 팀장)
- 전상준 (前 아름다운가게 국장)
- 전현경 (아름다운재단 전문위원)
- 정현경 (前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실장)
- 이상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실장)
- 이아영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과장)
- 최보경 (서울특별시 사회복지협의회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 과장)
- 허경태 (밀알복지재단 굿윌스토어 팀장)

